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마.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 운영세칙(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에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원 참석 수당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수반요인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 수당 및 시민의견조사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계	연 1회	12,500천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기본 70,000원X10명X3회=2,100천 원 · 초과 30,000원X10명X3회=900천 원	3,000천 원
전문업체 용역	- 의정비 시민의견조사 · 9,500,000원 X 1회 = 9,500천 원	9,500천 원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계 신정민(480-6527)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은 영
	담 당	김 동 순
	담 당 자	신 정 민 (480-6527)